

서울사이버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會議錄
(2015학년도 제1차)

회의소집통보일자	2015. 4. 10		
위원정수	10	재직위원	7

1. 일시 : 2015년 4월 24일(금요일) 오후 3시 00분

2. 장소 : 서울사이버대학교 A동 1층 1회의실

3. 출석위원(7명) :

위원 김윤희, 위원 박병대, 위원 박현석,
위원 서유석, 위원 이은주, 위원 전광호,
위원 정영애

(가나다순)

4. 결석위원(0명)

5. 회의안건

- 1) 임여금 처리원칙(안) 심의
- 2) 2014학년도 결산(안) 심의
- 3) 기타 안건

6. 회의진행

위원장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안건심의 :

박현석 위원 : 허묘연 위원이 총장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금번 회의부터 교직원위원으로 참석하게 된 정영애 위원, 전광호 위원을 소개하다.

학생위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상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학생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으나 2015학년도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아 신임 학생위원이 위촉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중 총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어 정영애 위원이 위원장으로 위촉 되었음을 설명하다.

위원장 : 박현석 위원에게 제1호안건의 설명을 요구하다.

19/4/2015

김윤희

이은주

전광호

2015. 4. 10
제1차
회의록

박현석 위원 : 잉여금이란 본예산의 전기이월자금과 결산이 반영된 추가편성예산의 전기이월자금의 차이로 발생하는 금액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본교 회계 처리상 발생하는 잉여금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매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함을 설명하고 제3조의 규정중 회계구분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하다.

위원장 : 제1호 안건인 잉여금 처리원칙 심의와 관련한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이은주 위원 : 제3조의 수정사항에 동의하되, 제4조와 관련하여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다.

서유석 위원 : 제4조 5호 내지 7호를 삭제하고 3호와 4호의 문구를 수정하자고 말하다.

박현석 위원 : 서유석 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3호를 '학생활동 지원'으로, 4호를 '교육환경 개선'으로 변경하고 5호 내지 7호를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묻다.

김윤희 위원 : 박현석 위원의 의견에 추가하여 제1조 내용 중 '회계 처리상'을 '회계 상'으로 문구를 변경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다

박병대 위원 : 박현석 위원의 의견과 김윤희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다.

전광호 위원 : 이은주 위원과 박병대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다.

위원장 : 이은주 위원과 박병대 위원의 동의와 전광호 위원의 재청에 따라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이에 위원장은 잉여금 처리원칙(안)의 제1조, 제3조 및 제4조가 수정된 내용으로 개정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어서 제2호 안건인 2014학년도 결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박현석 의원에게 설명을 요구하다.

박현석 위원 : 제1호 안건과 관련하여 2014학년도의 수입 및 지출은 각각 38,377,472천원으로 2014학년도 예산 38,484,106천원 대비 106,634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회의자료를 통하여 수입 및 지출별 세부적인 증감액 및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다.

위원장 : 제2호 안건인 2014학년도 결산(안) 심의와 관련한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서유석 위원 : 2014학년도 결산(안)에 동의하다.

박병대 위원 : 박병대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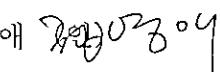
제2호
2014학년도 결산(안)
의견
박현석
김윤희
이은주
전광호
박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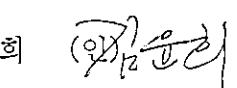
위 원 장 : 서유석 위원의 동의와 박병대 위원의 재청에 따라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이에 위원장은 2014학년도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알리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물으니 추가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타 안건이 있는가를 묻다.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5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종료를 선언하다.

7. 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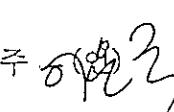
위원장이 다른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 하니 오후 3시 50분이 되다.

2015년 4월 24일

위 원 장 : 정 영 애 

위 원 : 김 윤 희  위 원 : 박 병 대 

위 원 : 박 현 석  위 원 : 서 유 석 

위 원 : 이 은 주  위 원 : 전 광 호 

(가나다순)

영여금처리 원칙(안)

제1조(목적) 이 원칙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회계 상의 잉여금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잉여금이란 본예산의 전기이월자금과 결산이 반영된 추가편성 예산의 전기이월자금의 차이로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원칙)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학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세부항목)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세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 지급
 2. 교육콘텐츠 질 향상
 3. 학생활동 지원
 4. 교육환경 개선

부칙

(시행일) 이 워크숍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워크숍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Mg(Mg) Mg^{2+} Mg^{2+} Mg^{2+} Mg^{2+}